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박희승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7968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유예제도 법제화 및 체납보험료의 분할 납부 횟수 확대	3

I. 개요

1. 박희승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7968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희승의원 등 18인

(2) 제 안 일 : 2026. 3. 31.

(3) 회 부 일 : 2026. 4. 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고시」를 통해 지역가입자 중 취약계층에 대해 보험료등의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있음.

그런데 체납처분 유예제도의 인지도가 낮고, 유예 기간 또한 최대 6개월에 그쳐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정상적으로 보험료등을 납부하기에는 충분치 못한 기간임.

한편, 현행법은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를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분할납부 횟수를 최대 24회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또한 체납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최대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체납처분 유예제도를 법제화하여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체납처분 유예제도를 체납자에게 안내하도록 하여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며, 체납처분 유예 기간과 보험료 분할납부 기간을 확대

하여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7 및 제82조제4항 신설).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유예제도 법제화 및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횟수 확대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보험료등의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유예기간은 유예하는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으로 하며,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월별 보험료에 대한 연체금은 징수하지 아니하고, 유예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체납자에게 알리도록 함(안 제81조의7 신설).

아울러,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횟수를 24회 이내로 하되, 납부 능력, 총 체납액, 체납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4회를 초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82조제4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1조의7(체납처분의 유예) ① 공단은 <u>보험료등을 체납한 자(제109조에 따른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신청하는 경우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u> ② 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기간은 <u>체납처분을 유예하는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으로 한다.</u> ③ 제2항에 따른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월별 보험료에 대한 연체금은 <u>징수하지 아니한다.</u>

제82조(채납보험료의 분할납부) ① ~ ③ (생략) <u><신설></u> ④ (생략)	④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채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는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등을 채납한 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⑤ 채납처분 유예의 대상·절차·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2조(채납보험료의 분할납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승인하는 경우 분할납부 횟수는 24회 이내로 한다. 다만,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납부 능력, 총 채납액, 채납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4회를 초과하여 분할납부 횟수를 정할 수 있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	--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81조¹⁾는 보험료등을 내야하는 자가 보험료등을 내지 아

- 1)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보험료등의 독촉 및 채납처분) ① 공단은 제57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8조의2, 제101조 및 제101조의2에 따라 보험료등을 내야 하는 자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중 1명에게 한 독촉은 해당 사업장의 다른 사용자 또는 세대 구성원인 다른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 ② 제1항에 따라 독촉할 때에는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채납처분을 하기 전에 보험료등의 채납 내역, 압류 가능한 재산의 종류, 압류 예정 사실 및 「국세징수법」 제41조제18호에 따른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금지 사실 등이 포함된 통보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해산 등 긴급히 채납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공단은 제3항에 따른 국세 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하거나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직접 공매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

니하면 공단은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도록 하고,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지난 2024년 7월 「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²⁾가 시행됨에 따라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³⁾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가 체납처분의 유예를 신청하면 6개월 동안 이를 유예하고, 유예기간 중 월별 보험료에 대한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함.

- 그에 따라 2024년에는 49건, 2025년에는 72건, 2026년에는 3월까지 27건, 총 148건의 체납처분이 유예되었음.

국가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는 공단이 한 것으로 본다.

⑥ 공단은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2) 「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와 관련하여 취약계층에 대하여 일정기간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체납처분 유예의 신청) ①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중 체납처분 유예 대상 보험료가 있는 자는 이 조에 따라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외국인인 제외한다.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긴급지원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가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할 경우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체납처분 유예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 서류 등 신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3조(유예 기간) 체납처분 유예의 기간은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로 하고 그 횟수는 1회로 제한한다.

제4조(연체금 징수의 예외) 제4조에 따른 유예기간 중 월별 보험료에 대한 연체금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제5호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고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되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반환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긴급지원대상자)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이하 “긴급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 체납처분 유예건수 >

(단위 : 건)

구분	2024	2025	2026.3.	계
유예건수	49	72	27	148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한편, 현행법 제82조4)는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5)는 분할납부하는 횟수는 24회 이내로 정하고, 매월 납부할 분할보험료는 월별로 고지된 보험료 및 연체금 이상으로 하되, 분할납부 신청월에 고지된 보험료가 현행법 제69조제6항6)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별로 고지된 보험료 및 연체금의 50%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 4)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① 공단은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② 공단은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 제81조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리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의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5회(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분할납부 횟수가 5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분할납부 횟수를 말한다)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한다.
 ④ 분할납부의 승인과 취소에 관한 절차·방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④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한 자가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할납부를 승인해야 한다. 이 경우 분할납부하는 횟수는 24회 이내로 정하고, 매월 납부할 금액(이하 “분할보험료”라 한다)은 해당 월별로 고지된 보험료 및 연체금 이상[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한 달에 고지된 보험료가 영 제32조제2호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직장가입자가 보수월액보험료를 체납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월별로 고지된 보험료 및 연체금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 6)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은 가입자의 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 및 하한을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및 하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천분의 50 이상 1천분의 85 미만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나.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가목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의 100분의 90 이상 100분의 100 이하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개정안은 현재 보건복지부고시에 규정된 체납처분 유예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그 적용대상을 현행 긴급지원대상자에서 보험료등을 체납한 모든 자로 확대하고, 유예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유예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으로 하며, 분할납부 횟수를 납부 능력, 총 체납액, 체납 기간 등을 고려하여 현행 최대횟수인 24회를 초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가피하게 보험료를 체납한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로 보임.

- 특히, 월별 보험료의 총 체납횟수가 6회 이상이고 소득·재산 등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등에는 보험급여가 제한될 수 있으나,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그 승인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낸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할 수 있어 분할납부 횟수가 확대되는 경우 그 확대되는 기간 동안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므로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의료 사각지대로 밀려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임.⁷⁾

7) 단,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5회(승인받은 분할납부 횟수가 5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분할납부 횟수)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급여가 제한됨.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③ 공단은 가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그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월별 보험료의 총체납횟수(이미 납부된 체납보험료는 총체납횟수에서 제외하며, 보험료의 체납기간은 고려하지 아니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미만이거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소득·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9조제4항제2호에 따른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2. 제69조제5항에 따른 세대단위의 보험료

④ 공단은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제69조제4항제1호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체납에 대하여 직장가입자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게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82조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그 승인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낸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82조에 따른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5회(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분할납부 횟수가 5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분할납부 횟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급여의 제한) ① 법 제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을 말한다.

② 법 제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란 6회를 말한다.

③ 법 제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소득은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득을 말하고, 재산은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법 제53조제3항제2호의 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소득이 336만원 미만이고, 그 세대의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이하 “과세표준”이라 한

□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첫째, 유예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현행 고시에서는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정하여 체납처분을 유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는 모든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점, 체납자에 대한 징수권 유예·완화는 성실납부자의 납부 유인을 저해시킬 우려가 있는 점, 보험료 징수 가능성이 없는 경우 현행법 제84조⁸⁾에 따라 결손처분이 이루어진다는 점 등을 감안한 결과라는 설명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둘째, 유예기간과 관련하여 개정안에 따른 유예기간인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은 다소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므로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사유를 구체화⁹⁾하여 이를 보완하거나 현행 고시와 같이 구체적 기간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이 450만원 미만일 것. 다만, 가입자가 미성년자, 65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소득 및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이 각각 공단이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것

2. 법 제53조제3항제2호의 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가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없을 것

④ 제3항에 따른 소득 및 재산의 확인 절차,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8)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결손처분)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보험료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제3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9) 참고로, 「국민연금법」은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동안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여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를 규정하면서 예외 기간을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조문에서 예외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기간의 불명확성이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국민연금법」 제91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① 납부 의무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

2.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3. 「초·중등교육법」 제2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5.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시설이나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6. 1년 미만 행방불명된 경우. 이 경우 행방불명의 인정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그 밖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셋째, 현행법 제91조¹⁰⁾는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휴직자등의 보수월액보험료를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제79조제5항¹¹⁾에 따라 고지가 유예된 경우 휴직 등의 사유가 끝날 때까지 진행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시효의 정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체납처분이 유예된 경우에도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효의 정지 규정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¹²⁾에서는 체납처분 등의 유예기간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넷째, 분할납부 최대횟수 완화와 관련하여, 공단은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5회(승인받은 분할납부 횟수가 5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분할납부 횟수) 이상 분할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하는데, 다음과 같이 분할납부 횟수가 증가할수록 취소율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특히 분할횟수를 21~24회로 승인받은 경우 취소율이 80% 후반대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분할납부 최대횟수가 24회를 초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정한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10)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권리

③ 휴직자등의 보수월액보험료를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제79조제5항에 따라 고지가 유예된 경우 휴직 등의 사유가 끝날 때까지 진행하지 아니한다.

11)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보험료등의 납입 고지) ⑤ 휴직자등의 보험료는 휴직 등의 사유가 끝날 때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 고지를 유예할 수 있다.

12)

「국세기본법」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③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3. 세법에 따른 압류·매각의 유예기간

「지방세기본법」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③ 제39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4.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유예기간

<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신청 및 취소 건수 >

(단위 : 건, %)

구분	분할횟수	신청건수	취소건수	취소율
2023년	3~5회	102	29	28.4
	6~10회	161	88	54.7
	11~15회	62	43	69.4
	16~20회	34	28	82.4
	21~24회	96	92	95.8
	계	455	280	61.5
2024년	3~5회	101	28	27.7
	6~10회	159	77	48.4
	11~15회	58	36	62.1
	16~20회	31	23	74.2
	21~24회	77	68	88.3
	계	426	232	54.5
2025년	3~5회	97	27	27.8
	6~10회	152	74	48.7
	11~15회	53	34	64.2
	16~20회	28	20	71.4
	21~24회	64	56	87.5
	계	394	211	53.6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다.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 안 제81조의7과 관련하여, 모든 가입자는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 체납자에 대한 징수권 유예·완화는 성실납부자의 납부 유인을 저해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 보험료 징수 가능성이 없는 경우 현행법 제84조에 따라 결손처분이 이뤄

진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수권 유예는 현행과 같이 화재, 자연재해, 휴·폐업 등 긴급한 위기상황 발생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해 명확한 기준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함. 특히, 개정안의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이란 불명확한 기준으로서, 해당 기준의 해석·적용과 관련해 현장에서 공단과 체납자 간 끊임없는 분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만약 사유가 계속되고 있다는 체납자 주장으로 체납처분이 수차례 연장될 경우 현행 3년의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료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존재함.

- 다음, 안 제82조의4와 관련하여, 분할납부 기간 확대 시 체납자의 납부 부담 완화로 성실납부 유인이 제고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과거 사례에 비추어볼 때 오히려 체납기간 연장에 따른 장기체납자 양산, 보험료 납부 유인 저하에 따른 분할납부 취소율 증가 등의 문제를 초래 중이므로 법률로 분할납부 기간을 확대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특히, 최근 3년간 분할납부 횟수가 21~24회인 경우 분할납부 취소율이 약 90% 수준이라는 점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건복지부 고시(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고시)에 따라 한시적(6개월, 1회 한정)으로 운영되는 체납처분 유예 기간을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으로 확대하고,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기간을 확대하여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깊이 공감함. 다만, 건강보험 체납처분 유예 기간 및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기간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등 유사 법령¹³⁾에서는 압류·매각 또는 체납처분 유예 기간을 1년 이내로 기간을 정하여 제한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법」¹⁴⁾ 상 보험료 징수권은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만약 체납처분 유예 기간을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으로 허용할 경우 유예기간 중에 보험료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음.
 - 한편 분할납부 기간의 확대가 체납자의 납부 부담을 완화하여 성실 납부를 유도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분할납부 기간이 늘어날수록 분할납부 취소율은 높아지고 있음. 분할납부 기간이 21~24회에 달하는 장기 구간의 경우 분할납부 취소율은 90%에 달함.
 - 즉, 분할납부 기간 확대는 분할납부 취소율 상승과 체납액 증가로 이어져 체납자의 보험료 납부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고, 분할납부 신청 역시 시효 정지사유가 아니므로, 24회 이상 분할납부 기간을 둘 경우 보험료 징수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음.
- 참고로,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¹⁵⁾에서는 분할납부

13) 「국세징수법」 제105조(압류·매각의 유예) ①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체납액에 대하여 강제징수에 따른 재산의 압류 또는 압류 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1.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체납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7조 (압류·매각의 유예) ①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체납처분 유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3조 (체납처분 유예) ①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14)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권리

15) 「국세기본법」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③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기간에 대하여 시효 정지를 규정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503

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1. 세법에 따른 분납기간

「지방세기본법」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③ 제39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1. 「지방세법」에 따른 분할납부기간